

#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33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18년 2월 22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 제57조제3항 중 “생활환경”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지원범위 선정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개정안이 거주시설의 재난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동 조례 역시 재난안전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“생활안전환경”으로 수정하고,
- 안 제49조제2항의 중앙정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려는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에 기 반영(개정 2018.1.4.)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,
- 안 제56조제3항에 추가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는 안 제57조제3항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에 해당하여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토록 함.

## 2. 주요골자

- 행정안전부장관을 현행대로 함(안 제49조제2항).
- 중복되는 예산지원근거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함(안 제56조제3항).
- “생활환경”을 “생활안전환경”으로 수정함(안 제57조제3항).

#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시·도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안 제5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장은 제47조의 복구활동, 제55조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안 제57조제3항 중 “생활환경”을 “생활안전환경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 ②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시·도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③ (생략)</p> <p>제56조(재정지원) ①·② (생략) ③ 시장은 제47조의 복구활동, 제55조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④·⑤ (생략)</p> <p>제57조(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	<p>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b>행정안전부장관의 시·도 재난 및</b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6조(재정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b>활동, 제57조의 재난취약계층 지원에</b> ----- 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7조(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 <u>시장은 제1항의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9조(안전관리계획의 수립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<b>현행과 같음</b>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6조(재정지원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(<b>현행과 같음</b>)</p> <p>④·⑤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7조(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b>생활안전환경</b>----- ----- -----</p>

##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2항 중 “제1항”을 “시장은 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p>제57조(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</u>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57조(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③ <u>시장은 제1항의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